

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20
(제8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,건설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건설과장 김 용 현
- 나. 개정사유
 -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자함.
- 다. 주요내용
 - 양수기를 대여시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 부터 10일간의 사용료 납기를 연기 할 수 있다는 폐지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는 전라남도 법무 11250-226(2000. 3. 27)호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민원편익 차원에서 화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별표에 따라 납부하고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료)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 간의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</p> <p>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.</p>	<p>제11조(사용료) ① (삭 제)</p> <p>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별표에 따라 납부하고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.</p>